

## 여름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7.17~8.16(1개월)…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출처 : 농식품부 (2017.7.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현, 이하 농관원)은 7월 17일~8월 16일 기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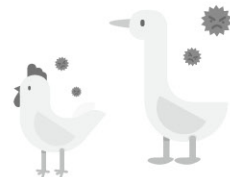
-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을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 '15.6.28.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지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지자체·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 위반업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무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이력번호 및 이력정보 기록·관리로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및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쇠고기 이력제: '09. 6월 시행, 돼지고기 이력제: '15. 6월 시행

##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벌기준

**축산물이력제**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에 이력(육음)번호 표시**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 시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
- 이력번호(12자리), 육음번호(L+14자리)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쇠고기 및 국내산 돼지고기

**[소포장 판매]**  
포장지와 라벨지를 이용하여 표시

**[잔열 판매]**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

**\*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기재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 기재 후 발급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정제업자, 입도업자, 식육수출업자, 통신판매업자,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 장부의 비치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이력제 문의 상담 1577-2633  
부장유동신고센터 1588-8112

**이력(육음)번호 표시 요령**

**\* 이력(육음)번호 표시**

- 이력번호(12자리): 축산물의 이력을 식별하기 위해 생성된 번호
- 육음번호(L+14자리 등):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묶어 새롭게 부여한 번호

**\* 육음번호 구성방법**

- 구매자들이 이력번호 요청 시 구성내역서 제공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육음번호 표시 및 관리방법	- 소의 종류가 같고 20마리 이하 - 만삼, 통삼, 채삼,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인 경우 가능	- 이력번호는 30개 이하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하는 돼지고기인 한방 더 육음번호 구성
육음번호의 구성 체계	L 1 170625	1234 001
	↓ ↓ ↓	↓ ↓ ↓
	육음고정코드 축종코드 (소, 돼지 1)	육음연월일
		※ 전산신고 대상: 이력지원실 문의 ※ 비전산신고대상: 시·군·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 마지막 한 자리를 제외한 4자리
		일련번호

**\*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및 횡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함

위반행위	위반 횡수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이력번호 미표시 및 거짓표시	40	80	160	320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미 발급	30	60	120	240
시정명령 위반	30	60	120	240
검사 또는 시료수거 거부 및 방해	50	100	200	400
장부 미기록 및 거짓기록 또는 보관의무 위반	20	40	80	320

※ 1년에 2회 위반 시 인터넷 포털(영업소의 행정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이력제 문의 상담 1577-2633  
부장유동신고센터 1588-8112